

계룡시조례 제 호

계룡시사무위임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속기관장 및 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차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직속기관장 및 면·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총무과	1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용품 매각처리 나. 단가 3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의 불용결정	계룡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 제18조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총무과	1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용품 매각처리 나. 단가 3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의 불용결정	계룡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 제18조 시행규칙 제15조	면· 동장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다음 사항을 제외한 기타사무의 권한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에 관한 사항은 면·동 신청분에 한함) 가.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의 규정 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등에 관한 사항 나. 동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 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17조 의8, 제18조의2	면· 동장

면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총무과	3	인감증명법에 규정된 인감사무중 다음의 권한 가. 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말소 권 한을 제외한 일체의 권한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장
시 민 봉사과	1	개별공시지가의 업무에 관한 다음 의 권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이륜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한 다음 의 권한(면장)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등 나. 이륜 자동차 번호판 교부 출생 · 사망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권한 (동장) 가. 호적과태료 부과 · 징수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 10조의2 영 제12조의10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호적법 제132조의2	면 · 동장 면장 동장
북 지 문화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 나. 신청에 의한 조사 다. 생계비 및 구호품 지급 라. 수급자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21조, 제22조	면 · 동장

면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북 지 문화과	2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급여증 재사용확인 나. 의료급여 증명서발급 다.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수리	의료급여법 제8조 의료급여법 제13조	면 · 동장
	3	장사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 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 규칙 제2조	면 · 동장
	4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교부 나.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다. 자녀교육비 지원신청서 수리	장애인복지법 제29 조제1항 동법 제30조 동법 제34조	면 · 동장
	5	노인, 아동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연금 신청서 접수 및 지급 나. 노인 건강진단 다. 소년 · 소녀가장 조사	노인복지법 제11조 동법 제27조 아동복지법 제30조	면 · 동장
농 업 경제과	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전용신고(면장) 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동장) 다. 농지원부의 작성비치(동장) 라.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동장) 마. 자경증명 발급(동장)	농지법 제37조 농지법 제8조 농지법 제51조 농지법 제52조 농지법 제52조	